

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일상감사 대상업무 지정 불합리

관 계 기 관 서울주택도시공사

내 용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라 한다) 감사실에서는 SH공사 「일상감사 시행내규」에 따라 주요 업무의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일상감사 대상을 [표 1]과 같이 6개 업무(25개 세부 업무)로 정하였고, 2015. 1월부터 2018. 4월까지(이하 “최근 3년간”이라 한다) 4,045개 사업의 일상감사를 실시하였다.

[표 1] 일상감사 대상업무별 실시현황

연번	일상감사 대상업무		실시건수	의견제시	제시율
	계		4,045	310	7.7%
1	주요사업과 기관운영에 관한 사항	업무추진의 기준 설정과 관련된 방침, 지침 등	307	40	13.0%
2		정관 및 사규 제정,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85	28	32.9%
3		이사회 의결 및 보고사항	57	16	28.1%
4		기본 사업계획 수립	38	4	10.5%
5		중요한 소송과 중재에 관한 사항	26	1	3.9%
6		신규 투자사업의 투자 결정	12	3	25.0%
7		대외기관에 제출하는 주요 재무보고	0	0	-
8	안전에 관한 사항	중요 안전계획의 수립	6	2	33.3%
9		중요 안전점검 결과의 보고	1	0	0%
10	계약에 관한 사항	추정가액 3,000만원 초과 계약 체결 등	2,991	159	5.3%
11		계약금액 500억원 미만 공종의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1억 이상 증감하는 경우	183	3	1.6%
12		계약금액 500억원 이상 공종의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2억 이상 증감하는 경우	110	11	10.0%
13		기계,전기,통신공사 등의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7,000만원 이상 증감하는 경우	78	5	6.4%
14	예산·회계· 결산·자금에 관한 사항	예산의 편성, 전용, 이월 및 예비비 사항	21	4	19.1%
15		결산, 가결산 및 잉여금의 처분 및 세무 조정에 관한 사항	11	2	18.2%
16		자금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	8	2	25.0%
17		중요한 물자 및 자산의 수급관리계획, 취득 및 매각에 관한 사항	4	0	0%
18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회계단위의 설정 및 폐쇄	0	0	-
19		건당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비의 집행	43	10	23.3%
20		건당 2,000만원을 초과하는 자본예산의 집행	16	7	43.8%
21		건당 100만원을 초과하는 업무추진비의 집행	1	1	100%
22		건당 300만원을 초과하는 조사분석비의 집행	0	0	-
23		가치급금의 지출과 정산	0	0	-
24	인사에 관한 사항	직원의 채용	46	11	23.9%
25		직원의 상벌	1	1	100%

그런데 최근 3년간 각 대상업무별 일상감사 실시현황을 보면 ‘대외기관에 제출하는 주요 재무보고’ 등 4개 업무는 일상감사를 1건도 실시하지 않았으며, ‘중요 안전점검 결과의 보고’ 등 3개 업무는 최근 3년간 일상감사 실적이 1건 밖에 없고, ‘중요한 물자 및 자산의 수급관리계획, 취득 및 매각에 관한 사항’은 위법·부당한 사항 등에 대해 시정·보완을 요구하는 감사의견 제시율이 0%였다. 이처럼 8개 업무의 일상감사 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확인한 결과 [표 2]와 같이 대상 범위의 불명확, 중복 지정, 일상감사 미의뢰, 대상업무 미발생 등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일상감사 실적이 저조한 대상업무에 대해서는 적정성, 효과성 등을 재검토하여 비효과적인 업무 등은 일상감사 대상업무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는데도, SH공사는 2014. 9월 대상업무를 지정한 이후 감사일 현재까지 일상감사 대상업무를 정비하지 않은 채 실효성이 낮은 업무를 그 대상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 2] 일상감사 실적이 저조한 대상업무 및 사유(2015.1. ~ 2018. 4.)

연번	일상감사 대상업무	실시건수	제시건수	의견제시율	일상감사 실적 저조 등 사유
1	대외기관에 제출하는 주요 재무보고	0	-	-	- 일상감사 대상사업 ‘이사회 의결 및 보고사항’과 중복 - 일상감사 미의뢰(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2	중요 안전점검 결과의 보고	1	0	0%	- 중요 안전점검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대상 여부 판단이 어려움 - 일상감사 미의뢰
3	중요한 물자 및 자산의 수급관리계획, 취득 및 매각에 관한 사항	4	0	0%	- 중요한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일상 감사 대상 여부 판단이 어려움
4	회계단위의 설정 및 폐쇄	0	-	-	- 신규 회계단위의 설정이나 기존 회계단위의 폐쇄는 발생하지 않음
5	건당 100만원을 초과하는 업무추진비의 집행	1	1	100%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대상사업 없음
6	건당 300만원을 초과하는 조사분석비의 집행	0	-	-	- 조사분석비는 신규사업 투자를 위해 실시하는 현장조사에 소요되는 제경비로 300만원을 초과하는 대상사업 없음 ※ 집행현황(2015.1.1.~2018.4.30.) 대상건수 : 144건 / 평균집행액 : 278천원
7	가치급금의 지출과 정산	0	-	-	- 별도의 방침수립 없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회계지출 업무
8	직원의 상벌	1	1	100%	- 처벌의 경우 외부감사 처분요구사항은 인사위원회 개최를 위해 인재기획부로 요구하고 자체감사 처분요구사항은 감사부서에서 실시

조치할 사항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일상감사 실적이 저조하거나 감사의견 제시율이 낮은 업무 등에 대하여는 기관 실정 및 특성을 고려하여 일상감사 대상업무 준치 여부를 재검토 하는 등 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